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2290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5월 4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청소년으로 하고, 안 부칙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(안 제7조의2).
- 2021년도에 입학한 청소년에게도 지원하도록 함(안 부칙 제2조).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의2 “서울시에”를 “서울특별시에”로 하고, “학생이 타”를 “청소년이 다른”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21년도에 이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입학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입학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〈 수정안 조문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 신 설 ></p>	<p>제7조의2(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) 시장은 <u>서울시에</u> 주민등록을 둔 <u>학생이 타</u>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1.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<u>2021년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이 조례에 의거 입학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제7조의2(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) 시장은 <u>서울특별시에</u> 주민등록을 둔 <u>청소년이 다른</u>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1.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<u>2021년도에 이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입학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입학한 것으로 본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)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1.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21년도에 이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입학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입학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 신·구 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<p>제7조의2(다른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 기관 지원)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1.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2021년도에 이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입학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입학한 것으로 본다.</p>